2014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1차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14. 11. 20(목), 13:00 ~

▣ 장　　소 : 영월 동강 CISTER

▣ 참 석 자 : 김학범, 류제헌, 백인성, 이광춘, 이두표, 이홍식, 전영우, 정종수, 황재하,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심의사항】		
1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 주변 부산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 사업	공개
2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및 「제주 서귀포 쇠소깍」 내 생태하천 정비	공개
3	「울진 불영사 계곡 일원」 주변 왕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공개
4	「부여·청양 미호종개 서식지」 주변 우사 신축	공개
5	「괴산 삼송리 소나무」 천연기념물 지정 해제	공개
6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내 신흥사 선체험관 건립	공개
7	「마라도 천연보호구역」 내 살레덕항 준설	공개
8	「홍도 천연보호구역 관리지침」, 「마라도 천연보호구역 관리지침」 폐지 및 「천연기념물·명승 현상변경 등 행위에 대한 위임사무 처리지침」 개정	공개
9	「화성 고정리 공룡알 화석산지」 주변 시화MTV 해안도로 건설	공개
10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내 건물 리모델링 사업	공개
11	「속리산 법주사 일원」 내 다목적 교육관 신축	공개
【검토사항】		
12	「제주 흑돼지」 천연기념물 지정 검토	공개
13	「과천 관악산 연주대」 명승 지정 검토	공개
14	「치악산 구룡계곡」 명승 지정 검토	공개
15	「마라도 천연보호구역」 내 살레덕항 개발계획에 대한 검토	공개
【보고사항】		
16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	공개

【심의사항】

천기 2014-11-01

1.「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주변 부산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

가. 제안사항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주변 부산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에 대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주변 부산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부산광역시장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

○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일원

○ 지 정 일 : 1966.7.13

(3) 신청내용

○ 사업명 :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주변 부산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강동동, 대저2동 일원

○ 사업내용

- 사업면적 : 11,885,910㎡

- 현상변경 허가신청내용

<문화재구역>

・하천시설 10,786㎡(제방 5,320㎡, 호안 4,185㎡, 제방연결로 1,281㎡)

・교량 32,341㎡(12개소)

・공원 및 녹지 : 39,706㎡(공원 및 녹지시설 설치)

<허용기준 1구역>

- 도로 31,518㎡ (B26~40m)
- 오수중계펌프장 1,011㎡
- 하천시설 136,786㎡ (제방B5.0m, 63,201㎡, 호안 64,048㎡, 제방연결로 9,537㎡), 교량 11,418㎡(12개소)
- 공원 및 녹지 1,008,694㎡ (완충저류시설 1,775㎡, 신설양수장 1,000㎡ 등)

※ <허용기준 2~5구역>

- 건축물은 허용기준 내 높이 및 제반사항 준수(지구단위계획상 해당구역내 높이기준 제한)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외

라. 검토의견(******)

○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주변 부산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문화재구역을 통과하는 교량 및 공원 녹지시설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마. 참고자료(현지조사 / 2014.9.18)

<*·*** 문화재위원>**

○ 본 사업계획은 낙동강 대저지구 일대에 조성예정인 에코델타시티의 계획 중 일부로 제방축조 및 확장, 맥도강과 평강천 교량조성, 서낙동강변의 녹지대에 주민 휴게시설 조성 등에 대한 계획임.

○ 본 사업계획의 기본계획만으로는 철새 및 역사문화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상태이며, 전체적인 실시설계도와 조감도가 완료된 다음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바. 의결사항 : 보류

천기 2014-11-02

2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및 「제주 서귀포 쇠소깍」 내 생태하천 정비

가. 제안사항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및 「제주 서귀포 쇠소깍」 내 생태하천 정비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및 「제주 서귀포 쇠소깍」 내 생태하천 정비를 위해 신청하는 사항으로 2차례 부결된 안건에 대해 보완하여 재신청한 사항임.

- '14.5월 문화재 관계 전문가 현지조사 결과 문화재 보존 및 경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불허('14.6.5.)
- '14.10월 문화재위원회 심의('14.10.29.) 결과 사업시행에 따른 문화재 보존 및 경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불허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서귀포시장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명승 제78호 제주 서귀포 쇠소깍

○ 소 재 지 : 제주 제주도 일원, 제주 서귀포시 쇠소깍로 128 일원

○ 지 정 일 : 1966.10.12. / 2011.6.30.

(3) 신청내용

○ 사 업 명 : 효돈천 및 쇠소깍 일원 생태하천 정비

○ 사업위치 : 제주도 서귀포시 효돈동 효돈천 일원(효례교～쇠소깍)

○ 사업내용

- 효돈천 내 매설된 차집관거 이설(1.5km) : 하천 외부 쇠소깍로 하부로 이설
- 하중도 외래수종 이식 및 자생 관목류 식재
- 자생수목지 조성(3,500㎡) 및 보도교(50m) 설치
- 장치형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장치형 7개소)

※ 참고자료(신청 변경내용)

신청내용	최초('14.5월)	2차('14.10월)	금번('14.11월)
차집관로 이설	○	○	○
하중도 생태복원	○	○	○
자생수목지 조성	○	○	○
보도교 설치	○	○	○
비점오염저감시설	○	○	○
하상정리	○	○(범위조절)	×
세월교 철거	○	○	×
쇠소깍 생태탐방로 연결	○	○	×
하천유지용수 공급시설	○	×	×
징검다리 설치	○	×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외

※ (자생수목지 조성사업) 현상변경 허용기준 상 제2구역(기존 건축물 범위 내 개축·재축) 및 제3구역(건축물 2층 이하(평슬라브 8m, 경사지붕 12이하), 농·임업에 한해 1,000㎡이하의 산림전용 허용)

라. 검토의견 (******)

○ 동 건은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효돈천 및 제주 서귀포 쇠소깍 내 하천을 정비하고자 두차례의 부결사항에 대해 일부 조정하여 재신청한 사업으로, 사업시행에 따른 문화재 보존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부결

천기 2014-11-03

3.「울진 불영사 계곡 일원」주변 왕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가. 제안사항

「울진 불영사 계곡 일원」주변 왕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울진 불영사 계곡 일원」주변 왕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위해 기존 대림보, 중섬보를 개·보수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울진군수, 한국농어촌공사장

(2) 대상문화재명 : 명승 제6호 울진 불영사 계곡 일원

○ 소 재 지 : 경북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산 121등

○ 지 정 일 : 1979. 12. 11.

(3) 신청내용

○ 사 업 명 : 울진 불영사 주변 왕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 사업위치 : 울진군 근남면 행곡리 산***(대림보)
울진군 서면 하원리 ***(중섬보)

○ 신청내용

- 사업목적 : 왕피천 유역에 은어·연어길을 위한 어도 설치하여 생태하천을 조성하고자 함
- 사업내용 : 기존의 대림보, 중섬보에 아이스하버식 어도 설치
  · 기존 설치된 대림보 어도와 중섬보 바닥보호공 콘크리트 철거
  · 시설물규격

시설명	형식	너비(m)	길이(m)	어도낙차(m)	어도기울기(m)	문화재구역
대림보	아이스하버식 어도	4.29	67.73	3.06	1/20	2구역
중섬보	아이스하버식 어도	4.29	70.61	3.20	1/20	지정구역

○ 사업기간 : 허가일 ~ 2016. 12. 31까지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중섬보), 2구역(대림보)

※ 2구역 : 울진군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기존 건축물 범위 내 개·재축 허용

라. 검토의견 (******)

○ 「울진 불영사 계곡 일원」 주변 왕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일환인 아이스하버식 어도를 설치할 경우 문화재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마. 참고자료

(* 문화재전문위원 **** 의견 2014.11.12)**

○ 원칙적으로 보를 없애고 주변을 자연형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함.

○ 농수자원 확보의 필연성이 존재한다면 기존시설물을 개축하여 어도 확보를 하는 것에는 동의함.

○ 현 설계안인 아이스하버식 어도는 경사구배 최소범위인 1/20 범위 안에 있으나 (1/25) 어류의 소상에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어도의 중간에 2개의 자연쉼터를 두어 역상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하는 자연형 어도로 설계하기 바람. 즉, 어도－쉼터－어도－쉼터-어도의 형태로 자연형과 아이스하버의 혼합형 어도로 설계하기 바람. 쉼터는 최소 길이 5m, 폭은 현재 폭보다 1.5배 ~ 2배 이상 넓게 하기 바람.

- 예를 들어 전체 어도 길이가 70m라면 25m(어도) + 5m(쉼터/자연석/거석) + 25m(어도) + 5m(쉼터/자연석) + 20m(어도)로 총연장 길이가 10m이상 증가하도록 설계하여 시공해야 함.

○ 공사과정 중 현탁물이 하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것

○ 어류의 이동이 거의 없고 갈수기인 추·동절기를 선택할 것

바. 의결사항 : 보류

천기 2014-11-04

4.「부여・청양 지천 미호종개 서식지」주변 우사 신축

가. 제안사항

「부여・청양 지천 미호종개 서식지」주변 “젖소 우사”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부여・청양 지천 미호종개 서식지」주변 “젖소 우사” 신축을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533호 「부여・청양 지천 미호종개 서식지」

○ 소재지 : 충남 부여군 규암면 금암리 일원, 청양군 장평면 분향리 일원

○ 지정일 : 2011. 09. 05.

(3) 신청내용

○ 사업명 : 「부여・청양 지천 미호종개 서식지」주변 “젖소 우사” 신축

○ 사업위치 : 충남 청양군 청남면 인양리 *****

○ 사업목적 : “젖소 우사” 신축

○ 사업내용 : 톱밥 발효 젖소 우사 신축

- 신청면적 : 4,330㎡(지목 : 답)
- 건축면적 : 2487.35㎡
  - 톱밥 발효 젖소 우사 : 2,049.85㎡
  - 퇴비사 : 270.00㎡
  - 착유, 관리사 : 167.50㎡
- 건축연면적 : 2487.35㎡
- 층수 / 높이 : 1층 / 7.90m
- 구조 / 지붕 : 일반 철골조 / 칼라강판・선라이트(젓소 우사), 샌드위치 판넬(착유실)
- 건폐율 : 57.444%(법정60%)
- 용적율 : 57.444%(법정80%)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42m 이격

※ 현상변경 허용기준 상 제2구역이나, 허용기준 공통사항에 분뇨 및 쓰레기 처리 시설 등은 현상변경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음.

라. 검토의견(******)

○ 천연기념물 제533호 「부여・청양 지천 미호종개 서식지」현상변경 허용기준 제2구역이나 문화재구역으로부터 42m 이격된 거리에 “톱밥 발효 젖소 우사 신축”에 따른 미호종개 서식지에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음.

마. 참고자료(현지조사 / 2014.11.14.)

<*** 문화재 전문위원>

ㅇ 근접거리에 의한 경관문제

- 천연기념물 핵심지역인접지역으로 42m의 거리에 있어 천연기념물의 특성상 심미적 및 경관적가치를 저해함.

ㅇ 악취문제

- 젖소우사는 사육과 축양과정 중에 주변에 악취를 피우는 특성이 있음. 특히 여름철의 기류에 의한 저기압의 형성, 봄과 가을의 기온역전현상에 의해 주변에 공기를 낮게 드리워 현재 농사를 짓는 사람은 물론 천연기념물을 지대를 문화나 생태관광으로 찾는 사람들에게 문화재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음.

ㅇ 민원 허가사유 발생

- 이 지역은 농경지로서 만일 한 가구를 허가할 경우 인접한 다른 농가의 축산허가도 불허할 특별한 명분이 없어져 대량의 우사축조허가를 방조하는 결과를 유발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일대에 수질 및 악취오염의 커다란 원인으로 제공될 것이 우려됨.

ㅇ 수질오염문제

- 우사는 대표적인 수질오염원임. 장마기나 우기에는 거의 방치되어 수로로 축산오염물이 직접 유입되거나, 처리를 위한 퇴적물의 경우도 직접 하천이나 수로로 유입되기 쉬움. 특히 현재처럼 원인행위자가 직접 하수를 처리하는 경우 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이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직접 처리하고자하는 의지가 없을 경우 이행되기 어려움. 따라서 그러한 체계가 갖추어진 후에 허가가 가능함.

ㅇ 종합의견

- 미호종개는 한국의 고유종이며, 금강특산종이며, 천연기념물종이며, 환경부지점 멸종위기 1급종 일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금강의 일부지역에서만 확인되는 특별한 종으로 생태적인 집단군집을 이루고 있는 지역임.
- 특히 본 천연기념물지역인 지천미호종개서식지는 한국에서 유일하게 자연적으로 보존이 잘 된 특별한 서식지임.
- 본 지역의 주변에는 부여백제문화단지가 있으며, 충남의 알프스라고 불리는 청양의 매우 훌륭한 숲과 자연을 갖추고 있음. 또한 아름다운 농촌경관을 가진 지역으로, 당장의 눈앞의 이익을 찾아 우사나 축사 등의 냄새를 피우는

시설보다는 친환경 농업 및 다양한 화원등 아름다운 시설재배를 통해, 백제문화단지와 청양의 숲생태계, 백제보를 연결하는 생태와 문화관광을 중심으로 하는 친환경 농업과 관리로 지역의 경제성을 높이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천연기념물지역으로서 미호종개의 서식지 적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경관측면, 지리적 측면, 악취문제, 수질오염측면, 장기적인 지역경제성 측면을 고려하여 젖소우사의 설치를 반대함.**

바. 의결사항 : 부결

천기 2014-11-05

5.「괴산 삼송리 소나무」천연기념물 지정 해제

가. 제안사항

「괴산 삼송리 소나무」가 고사하여 국가지정문화재 지정해제 하는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괴산 삼송리 소나무가 고사하여 국가지정문화재 지정해제 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건은 본 위원회 제9차 회의(2014.9.24)의 검토를 거쳐 해제 예고후 심의사항으로 부의하는 것임.

- 해제 예고일 : 2014. 10. 06
- 해제 예고기간 : 지정 예고일로부터 30일간(2014.10.16~11.05)
- 해제 예고결과 : 제출의견 없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괴산군수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290호 괴산 삼송리 소나무

(3) 소 재 지 :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삼송리 산250번지

(4) 해제내용

○ 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290호 괴산 삼송리 소나무

○ 소 재 지 :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삼송리 산250번지

○ 수　　량 : 1주(4,386㎡)

○ 지 정 일 : 1982. 11. 09.

라. 검토의견 (******)

○ 괴산 삼송리 소나무는 2012년 태풍 볼라벤의 강풍 피해로 인하여 도복되었으며, 회생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3년 11월 현지조사 결과 최종 고사 판정되었으며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여 문화재 지정을 해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마. 전문가 조사 의견

(1) 현지조사 의견

<* 문화재위원>**

○ 괴산 삼송리 소나무는 2013년 11월 6일 고사 판정을 받은 나무로서 천연기념물 지정을 해제하여야 함.

<* 문화재위원>**

○ 2012년 태풍 볼라벤에 의해 도복된 천연기념물 제290호 괴산 삼송리 소나무를 소생 시키기 위해 그동안 노력하였으나 끝내 고사한 건임.

○ 고사여부는 2013년 11월 6일 현지조사(관계전문가 4명)에서 소생이 불가능함에 따라 완전 고사 한 것으로 최종 판정한바 있음.

○ 따라서 고사된 소나무는 천연기념물의 가치를 완전 상실한 상태이므로 해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됨.

<* 충청북도 문화재위원>**

○ 천연기념물 제290호 괴산 삼송리 소나무가 2012년 태풍 볼라벤의 강풍으로 인해 쓰러져 생명력을 잃고 고사되어 보존처리와 주변 정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천연기념물 해제는 타당함.

바. 의결사항 : 가결

천기 2014-11-6

6.「설악산 천연보호구역」내 신흥사 선체험관 건립

가. 제안사항

「설악산 천연보호구역」내 신흥사 선체험관 건립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설악산 천연보호구역」내 신흥사 선체험관 건립을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대한불교조계종 제3교구 본사 신흥사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171호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 소 재 지 : 강원도 속초시, 인제군, 양양군 일부

○ 지 정 일 : 1965.11.5.

(3) 신청내용

○ 사 업 명 : 신흥사 선체험관 건립

○ 사업위치 :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산**번지 일원(내원암)

○ 사업내용

- 기존 건물(법당) 철거 211.73㎡, 기존 산신각 이전(7.97㎡)
- 4동 건립 : (선실) 149.76㎡, 지상1층, 한식목구조, "一"자, 정면5칸, 측면3칸
  (관리동) 100.8㎡, 지상1층, 한식목구조, "一"자, 정면6칸, 측면2칸
  (선체험관1) 100.8㎡, 지상1층, 한식목구조, "一"자, 정면6칸, 측면2칸
  (선체험관2) 376.92㎡, 지하·지상1층, 한식목구조, "一"자, 정면5칸, 측면4칸
- 담장설치(한식막돌, H1.5~2m, W0.6m, L147.8m), 진입로 설치(W1.5m, L44.1m), 석축설치(H1.5×L126.8m/H2×L129m/H4×L36.8m), 절토 및 성토 450㎥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

라. 검토의견 (******)

○ 동 건은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내 내원암 위치에 기존 법당을 철거하고 인근 지역에 신흥사 선체험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에 따른 문화재 보존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현지조사 의견 / '14.11.12.)

<***·*** 문화재위원>

○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내 신흥사에서 울산바위 쪽으로 약 1.5km 이격된 내원암에 기존 법당 1동을 철거하고 산신각을 이전한 후 선체험관 센터(4동) 신축을 위한 사업으로 현 신축계획은 천연보호구역 내 과도한 성·절토로 문화재 보존관리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 부결

천기 2014-11-07

7.「마라도 천연보호구역」내 살레덕항 준설

가. 제안사항

「마라도 천연보호구역」내 살레덕항 준설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마라도 천연보호구역」내 살레덕항 준설을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서귀포시장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423호 마라도 천연보호구역,

○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580 등

○ 지 정 일 : 2000.7.18.

(3) 신청내용

○ 사 업 명 : 마라도 살레덕항 준설

○ 사업위치 :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번 지선(공유수면)

○ 사업내용

- 마라도 살레덕항 준설(계획수심 DL.(-) 3.5m, 준설면적 3,600㎡)
- 박지준설(여굴포함) 5,893㎡, 여쇄 1,319㎡, 오탁방지망 및 등부표 설치 등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

라. 검토의견 (******)

○ 동 건은 마라도 천연보호구역 내 살레덕항 박지준설 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시행에 따른 문화재 보존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보류

천기 2014-11-08

8. 「홍도 천연보호구역 관리지침」, 「마라도 천연보호구역 관리지침」 폐지 및 「천연기념물·명승 현상변경 등 행위에 대한 위임사무 처리지침」 개정

가. 제안사항

「홍도 천연보호구역 관리지침(문화재청 훈령 제315호, '14.3.11.)」 및 「마라도 천연보호구역 관리지침(문화재청 훈령 제277호, '12.9.7.)」을 폐지하고, 「천연기념물·명승 현상변경 등 행위에 대한 위임사무 처리지침(문화재청 훈령 제263호, '12.7.1.)」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홍도 천연보호구역 관리지침」 및 「마라도 천연보호구역 관리지침」을 폐지하고, 동 지침내용을 일부 수정 및 간소화하여 「천연기념물·명승 현상변경 등 행위에 대한 위임사무 처리지침」에 추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170호 홍도 천연보호구역(1965.4.7.)

* 소재지 :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홍도리 *외

○ 천연기념물 제423호 마라도 천연보호구역(2000.7.18.)

* 소재지 :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 등

(3) 신청내용

○ 「홍도 천연보호구역 관리지침(문화재청 훈령 제315호, '14.3.11.)」 및 「마라도 천연보호구역 관리지침(문화재청 훈령 제277호, '12.9.7.)」 폐지

- 동 2개 지침의 내용이 문화재구역 내·외 시도 위임사항에 대한 규정으로 「천연기념물·명승 현상변경 등 행위에 대한 위임사무 처리지침(문화재청 훈령 제263호, '12.7.1.)」에 통합하고자 폐지

○ 「천연기념물·명승 현상변경 등 행위에 대한 위임사무 처리지침(문화재청 훈령 제263호, '12.7.1.)」 개정

- 「홍도 천연보호구역 관리지침」 및 「마라도 천연보호구역 관리지침」 내용을 간소화하여 동 위임사무 처리지침에 통합

* 각 관리지침 간소화 및 홍도2구에 대한 처리기준 추가

라. 검토의견 (******)

○ 기존 홍도 및 마라도 천연보호구역 관리지침을 폐지하고 기준을 재검토하는 등 간소화하여 기존 위임사무 처리지침에 통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화재 보존·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가결

천기 2014-11-09

9.「화성 고정리 공룡알 화석 산지」주변 시화MTV 해안도로 건설

가. 제안사항

「화성 고정리 공룡알 화석 산지」 주변 시화 MTV 해안도로 건설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화성 고정리 공룡알 화석 산지」 주변 시화 MTV 해안도로 건설을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한국수자원공사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414호 화성 고정리 공룡알 화석산지

○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산5번지 일원

○ 지 정 일 : 2000.03.21

(3) 신청내용

○ 사 업 명 : 해안도로 건설공사

○ 사업위치 : 안산시 원시동 ~ 안산시 초지동 일원

○ 사업내용 : 시화호 일부를 매립하여 시화MTV와 안산신도시를 잇는 해안도로 건설

- 해안도로 신설 : 연장 2.95km, 설계속도 60km/h
- 횡단면도 : 폭원 30.5m, 6차로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50m 이격

※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제1, 3구역
제1구역 : 기존 건축물 범위내 개・재축 허용, 육림사업 허용
제3구역 : 화성시 도시계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라. 검토의견 (******)

○ 동 사업은 화성 고정리 공룡알 화석산지 주변(1,3구역)에 시화호 일부를 매립하여 해안도로을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에 따른 문화재 보존 및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마. 참고자료 (현지조사 의견)

<*** 문화재 위원>

○ 화성 고정리 공룡알 화석산지는 2000년03월21일 천연기념물 제414호로 지정됨.

○ 현상변경 허가신청 건은 2011년12월 허가된 시화호 공유수면에서의 퇴적토 준설과 2013년03월 허가사항 변경허가와 관련이 있음.

○ 사업대상지는 현상변경 허가기준 1구역(기존 주택 개·재축 허용, 육림사업 허용)과 3구역(지방 조례에 따름)에 해당되며, 공룡알 화석산지와는 약 4.2km 떨어져 있어 화석산지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판단됨.

○ 그러나 시화호 호안경관이나 생태계(특히 조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도로개설이 허가 된다면 호안 축조시 호안쪽 사면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주변 자연환경과 잘 조화를 이루도록 축조하여야 함.

바.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천기 2014-11-10

10.「태안 신두리 해안사구」내 건물 리모델링 사업

가. 제안사항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내 건물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내 건물 리모델링 사업을 위하여 신청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태안군수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431호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 소 재 지 :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산 263-1번지 등

○ 지 정 일 : 2001. 11. 30.

(3) 신청내용

○ 사 업 명 :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내 건물 리모델링

○ 사업위치 :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

○ 사업내용 : 건축면적 97.98㎡

- 건축물의 형태를 그대로 활용하고 내부 구조만 변경 사용하고자 함

당 초	재 활 용	비 고
거실 및 주방	사구 생태 전시실	
큰 방 1		
작은방 1	연구실	
화장실 2	화장실(남1,여1)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내

라. 검토의견 (******)

○ 동 건은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전시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문화재 보존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마. 참고자료 (현지조사 의견)

<*** 문화재 위원>

○ 신두사구는 사구에 공급되는 모래의 량이 줄어들고, 초목의 피복으로 인한 사구의 이동이 정체되어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사구 복원을 권장하는 관련 학자 등의 의견이 다수임.

○ 단계적으로 사구의 복원을 추진하면서 인공구조물을 존치시킨다는 것은 구조물에 의한 교란을 방치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예견되고 건물 리모델링 후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은 사구센터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

○ 더불어 건물을 다수인이 활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오·폐수는 사구를 오염시킬 수 있음. 따라서 사구의 복원 차원에서 인공 구조물은 철거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 부결

천기 2014-11-11

11.「속리산 법주사 일원」내 다목적 교육관 신축

가. 제안사항

「속리산 법주사 일원」내 다목적 교육관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속리산 법주사 일원」내 다목적 교육관 신축 사업을 하고자 신청한 사안임.

<참 고>

- 2014. 09. 24.(수) 문화재위원회 심의 : 보류
  (사찰 진입부 수림지를 훼손하므로 건립부지 대안 검토 후 재심의)
- 2014. 10. 29.(수) 문화재위원회 심의 : 부결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법주사 주지 현조

(2) 대상문화재명 : 명승 제61호 속리산 법주사 일원

○ 소 재 지 :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산 1-1번지 등

○ 지 정 일 : 2009. 12. 9.

(3) 신청내용

○ 사 업 명 : 법주사 다목적 교육관 신축

○ 사업위치 :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번지 일원
(기존 템플스테이 주차장 부지)

○ 사업내용

- 사업목적 : 전래 불교문화 의식주에 대한 현대적 관점에서 재조명함과 아울러 전통문화 체험시설 건립으로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
- 규 모 : 전통건축 / 지상 2층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 연 면 적 : 855.36㎡
- 건축면적 : 524.68㎡
- 대지면적 : 1,277.00㎡
- 용 도 : (1층) 불교역사교육관 1・2실, 불교전시관, 수장고, 사무실, 방풍실, 화장실. 홀, 계단실, 복도
  (2층) 불교체험관, 화장실, 계단실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5. 12. 31까지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 지정구역 내

라. 검토의견 (******)

○ 「속리산 법주사 일원」문화재 지정구역 내 법주사 다목적 교육관 신축 건으로 규모, 위치 등 명승 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마. 참고자료 (현지조사 의견)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2014.9.12.)

○ 신청 사업은 법주사 전통사찰 구역의 전면에 위치하고 있는 양호한 수림을 제거하고 현대식 건축물을 짓고자 하는 사업으로, 매우 큰 규모의 수림지가 훼손되고 법주사의 전통사찰 경관이 왜곡되는 결과가 예상되므로 불허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2014.9.12.)

○ 제출된 심의도서에 명기된 사업목적상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은 종교단체로서 타당성이 없어 보임

○ 면적계획을 보면 너무 많은 기능이 방만하게 포함되어 있고, 현지 설명 중 설계자로부터 연면적 500평을 300평까지 줄일 수 있다고 들었음

○ 현지조사 결과 건립후보지는 지정구역에 있고 본전 입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송림을 훼손하게 되므로 위치상 부적합함

○ 규모를 줄여 최소화하고 위치를 옮겨 건립할 것을 권고함

○ 현재의 건립위치는 낙엽송을 제거하고 오히려 낙락장송으로 원형복원 할 것을 건의함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2014.9.12.)

○ 법주사는 다량의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문화재의 안전적 보존과 전통문화 홍보 및 교육을 위해 박물관 및 교육관의 건립은 시급한 사항이라고 판단됨

○ 사찰 문화재의 특수성과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사찰 경내에 건립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나 주변 일대가 우수한 산림 자원과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대규모의 건축물은 주변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지정 명승지와 사찰박물관이라는 특수성을 고려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전통양식으로 건축해야 한다고 사료됨

바.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검토사항】

천기 2014-11-12

12.「제주 흑돼지」천연기념물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제주 흑돼지」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제주 흑돼지」의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 추진경과

- '14. 10. 8. 제주흑돼지 천연기념물 지정신청(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청)
- '14. 10. 16. 1차 현지조사<*** 문화재위원, (사)한국종축개량협회 *** 팀장>
- '14. 11. 15. 2차 현지조사(*** 문화재위원,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시험장 *** 박사)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축산진흥원장)

(2) 신청내용

○ 명 칭 : 제주 흑돼지

○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축산진흥원 내)

○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

○ 지정가치

- 제주흑돼지는 삼국지위지동이전(285년), 탐라지초본(1651~1653년), 성호사설(1681~1763년), 해동역사(1823년) 등 옛 문헌에 돼지를 길렀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어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음.
- 제주흑돼지는 제주도의 생활, 민속, 의식주, 신앙 등 문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 향토적 가치가 있음.
- 제주흑돼지는 제주의 역사와 제주도 특유의 기후와 풍토에 잘 적응하여 체질이 강건하고 질병저항성이 강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육지와는 다른 형질을 가지고 있어 차별성이 있음.
- 1986년부터 제주축산진흥원에서 제주도내 재래돼지 5두를 구입하여 순수

계통번식사업을 시작하여 제주흑돼지 복원사업을 통해 현재 243마리를 보존관리하고 있으며, 멸종위기에 처한 제주흑돼지의 보존하여 국가 유전자원 확보 및 보존을 위해 천연기념물 지정이 필요함.

○ 문화재관리단체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라. 문화재현황

□ 역사적 의의

- 제주도 곽지 유적지에서 다양한 유물들이 출토되었으며 그중 돼지 유존체에 대한 염기서열 분석결과 돼지 DNA와 99% 이상의 상동성을 가지고 있음
- 재래돼지의 기록은 삼국지위지동이전에서 고대 삼국의 하나인 부여에서 관직명으로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등 동물명을 사용한 사실과 조선왕조실록 세조 33권 8년 6월에 세조 10년에 호조에서 경외의 대소인가에서 모든 닭, 돼지를 기르게 하고, 그 등급을 나누어 상벌을 줄 것을 청하여 따랐다는 기록이 있으며, 이익의 성호사설 제6권 만물문 금수색에는 돼지의 모색에 관한 언급이 있는데 대부분의 돼지가 다 검은빛을 띠며, 간혹 흰점이 박힌 돼지가 있으나 그 수는 많지 않다고 하였음. 구한말까지 전국 각지에서 재래돼지 사육이 이루어졌으며 사육지역의 지명을 따 경기도 강화도지방의 강화돈, 경상북도 김천 지례지방의 지례돈, 경상남도 사천지방의 사천돈, 전라북도 정읍지방의 정읍돈, 제주 지역의 제주돈 등의 이름으로 불리었으며, 각각 독특한 형태를 유지했다고 전해짐
- 제주흑돼지에 대한 옛문헌으로 탐라지, 제주읍지, 대정정의읍지, 제주군 기록에 제주흑돼지 사육 기록이 있음

□ 서식지역 또는 사육지역

- 전국 각지에서 재래돼지 사육이 이루어졌으며 사육지역의 지명을 따 불리었지만 일제 강점기 ,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외국에서 도입된 개량돈 등과의 누진교잡 등으로 순수 재래돼지 개체수가 급감하게 되어 멸종위기에 처하게 되었음.
- 제주도의 제주돈은 1960~70년까지도 “돗통시”라 하여 돌담을 둘러 터를 잡고 변소에 돼지를 함께 두어 사육하여왔으며 1980년대 후반에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에서 재래종에 대한 조사와 수집 활동 측면에서 성돈 5두를 구입하여 순수 계통 번식을 개시하였고, 이후 축산시험장(현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이들 후손들 중 일부를 분양받아 내륙지역 재래돼지 순수화 복원 연구사업을 수행하게 됨.

□ 외형 및 유전형질

< 유전형질 >

- MS 유전자형 분석에 기초한 재래돼지 집단의 유전적 균일도 초위성체를 이용한 재래돼지 집단 간에 집단 구조분석 결과 유전적 균일도 90%이상을 보였으며, 4개의 클러스터 중 충북집단과 성환집단이 클러스터 1, 전남과 경북집단이 클러스터 2에 속하였으며, 제주집단은 클러스터 3에 단독으로 존재하여 타 재래돼지 집단과 유전적 특이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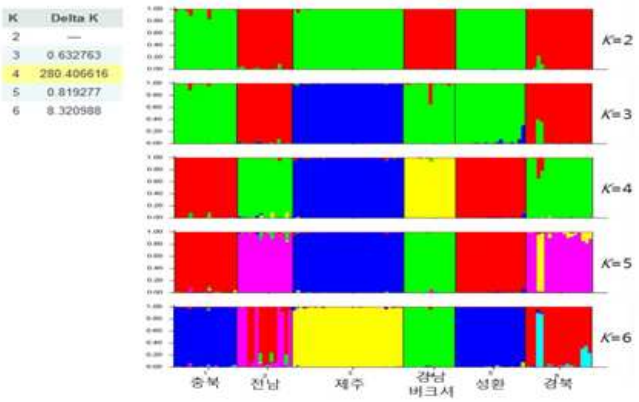

Given pop.	Inferred Clusters				Pop. Size
	1	2	3	4	
충북	**0.985**	0.010	0.002	0.003	17
전남	0.007	**0.967**	0.008	0.018	15
제주	0.007	0.002	**0.989**	0.002	30
경남버크셔	0.002	0.006	0.001	**0.991**	14
성환	**0.989**	0.001	0.009	0.001	19
경북	0.034	**0.960**	0.002	0.004	18

<출처 :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시험장, 2013>

- MS 유전자형 분석에 기초한 재래돼지의 집단별(A), 개체별(B) 계통도 -

초위성체 마커를 기초한 유전적 유연관계 분석 결과, 각 집단별로 독립적인 그룹을 형성하였으며, 성환집단과 충북집단, 경북집단과 전남집단이 상대적으로 가까운 유연관계를 보였으며, 제주집단은 타 집단에 비해서 유전적으로 먼 집단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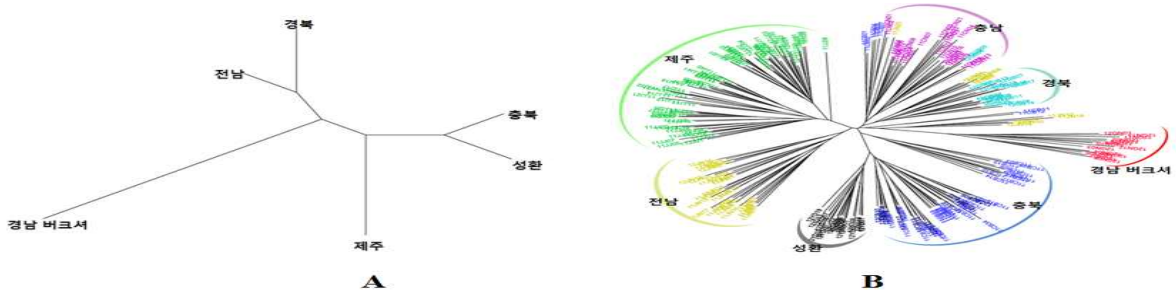

<출처 :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시험장, 2013>

◦ 성환집단(국립축산과학원 보존 재래돼지집단), 경남집단(지방 종축기관 보존 외래종집단)

◦ 충북, 전남, 경북집단 (각 지방 종축기관 보존 재래돼지집단)

◦ 제주집단(제주특별자치도축산진흥원내 보존집단)

- 모색유전자 분석
- mtDNA D-loop 영역에 기초한 유전적 다양성 조사
- 초위성체 유전자형 분석에 기초한 재래돼지 집단의 유전적 균일도
- 돼지 품종별 계통분석
- 재래돼지 집단 혈통분석
- 제주흑돼지 특이적 유전자 36개 발굴(NSG 기법 활용)
- 재래흑돼지와 중국 재래돈과의 MC1R 유전자의 유전자형 분석
- 재래흑돼지와 버크셔 돼지간의 RNA sequencing을 통한 전사체 특성 규명

< 표준품종의 확립 >

- 조선농업연감(1920), 조선총독부 권업모범장 성적요람(1927), 국립농사시험장 보고서(1946)을 근거로 모색, 비단색 및 지제가 흑색이고, 머리는 길고 뽀족하며, 이마에 산모양의 주름이 있고, 코는 길고 곧으며 세로 주림이 있고 턱이 곧으며, 귀는 직립전향(상향)인 개체를 재래돼지로 정의함을 바탕으로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재래돼지”로 품종 등록하고 있음
- 이런 등록 기준에 근거하여 1986년부터 순수 계통 번식한 제주흑돼지를 2008년부터 등록하여 왔으며, 외모 선발 도태를 거쳐 현재 75마리가 등록됨

< 외형형질 >

○ 전신 모색은 흑색, 모발은 굵고 길며 밀생되어 있으며, **귀가 작으며 접혀 있지 않고 위로 솟아 있음(직립상향)**

구분	축산진흥원	국립축산과학원	비고
귀	귀가 작으며 위로 솟아 있음(직립상향)	귀가 크고 넓으며 앞으로 뻗어 있음(직립전향)	-
모발	흑색, 모발굵기 굵음 (굵기 평균 0.3mm내외)	흑색, 모발굵기 얇음 (굵기 평균 0.13mm)	돼지 모발 굵기는 0.2mm을 넘지 않음 (개량돼지 포함)

□ 군집규모

- 현재 제주 도내 80,319마리가 사육되고 있으며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 시험장 및 매년 분양을 희망하는 농가, 성읍민속마을 등에 정기적으로 분양을 실시하고 있음, 현재 우리원 271마리 보유중

□ 사육시설

- 현재 돈사 2개동 632㎡면적에 사육중임.

구 분		축사면적 (실제면적)	두 당 소요면적	적정두수	비 고
재래 돼지	소 계	632	-	600	
	웅 돈	68	6.0	11	
	분 만	186	3.9	48	
	대 기	198	1.4	141	
	육성·자돈	180	0.45	400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85호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기준에서 제시한 사육환경을 확보하여 사육하고 있음

□ 사양관리

- 제주흑돼지 사양관리는 성장 단계별 표준 사양관리에 의하여 사양관리를 하고 있으며 프로그램화된 백신접종 스케줄에 맞춰 질병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또한 매년 질병 모니터링을 위한 검사의뢰 및 병성감정 등을 통하여 질병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모든 원내 출입차량 및 출입자에 대한 철저한 소독 및 축사 내·외부 1일 1회 이상 소독으로 악성가축전염병으로 부터의 차단방역에 노력을 기하고 있음.

마. 검토의견 (******)

○ 제주흑돼지는 축산진흥원에서 1986년 제주도 산간오지에서 재래돼지 특징이 있는 5두(암4, 수1)를 수집하여 순수계통 번식을 실시하여 2008년부터 현재까지 제주흑돼지 보존을 위해 지속적으로 순수혈통 재래돼지를 품종등록을 실시하여 제주흑돼지의 순수혈통을 보존하고 있음

○ 육지와 격리되어 제주섬만의 향토성과 생활, 민속, 의식주, 신앙 등 문화와 융합되어 독특한 문화를 형성함.

○ MS 유전자형 분석에 기초한 제주흑돼지 집단 간 구조분석 결과 유전적 균일도가 90%이상을 보이고 있으며, 타 재래돼지 집단과 유전적 특이성이 존재함

○ 제주 흑돼지 지정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바. 참고자료 (현지조사 의견 /1차 '14. 10.8 / 2차 '14.11.15)

<* 문화재위원>**

○ 제주 흑돼지는 개국설화에 등장하고 진상품이 될 정도의 역사성과 함께 돗통시에서 사육하였다는 특이한 문화성도 있다. 그리고 제주는 육지와 격리된 섬이라는 점에서 재래돼지의 특성이 육지보다 잘 보존된 지역이라고 평가된다.

○ 한국종축개량협회가 정하고 있는 재래돼지의 특징은 전신이 흑색이며, 코주둥이나 발굽의 색이 흑색이어야 하며, 백자모(새치)나 백반모가 없어야 되고, 귀가 직립하고 전향되어야하고, 이마에는 산모양 주름이 있고, 콧등에 세로주름이 있어야 하고, 6쌍 이상의 유두를 갖고 있되 부유두는 없어야한다.

- 10월 16일 1차 현지 방문 조사 시 관찰한 제주 흑돼지는 전신 피모는 흑색이나 백색모가 밀생한 백반모 유사구조가 70마리 중 3마리 관찰되었고, 아울러 많은 개체(12마리)에서 백자모를 관찰 할 수 있었으며, 발굽이 백색인 개체(3마리)도 관찰되었다. 더구나 이마의 산모양 주름이 불분명한 개체(3마리)도 있었다. 그리고 제주 흑돼지가 육지 흑돼지와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이 무엇인지 지적한 바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보완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여 11월 15일 재방문하여 확인한 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 제주축산진흥원은 1달여 사이에 많은 노력을 하여 새치돈, 주름 미약돈, 노령돈, 번식장애돈, 근교계수 불량돈 등 27마리를 도태하기 위해 인접 돈사에 격리조치를 취하였으나 행정절차상 그대로 혼거되어 있었고, 모돈에서 부유두가 관찰되는 개체가 있는 등 아직 불량돈 제거가 미진한 상태였다.
- 뿐만 아니라 제주 흑돼지와 육지 흑돼지와 구분되는 특징에 관해서는 제주돼지는 귀가 작고 위로 솟은 직립상향(육지 재래돼지 크고 직립전향)이고, 모발이 0.3mm 내외로 굵다고(육지 재래돼지 0.13mm)하나 이에 관한 문헌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더구나 현재 제주 흑돼지 표준기준이 한국종축개량협회가 제시한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마치 제주 흑돼지만의 특징으로 제시한 것은 자체의 모순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육지 흑돼지와 구별되는 특징을 재정립하여 보완한 후 제주 흑돼지를 위한 표준체형기준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제시하고, 전문가의 현장조사 후 그 결과를 대상으로 천연기념물 지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사)한국종축개량협회 *>**

▢ 제주 흑돼지의 사육 기원

○ 한국의 재래돼지는 만주지역에서 서식하던 대형, 중형, 소형중 중 이동이 쉬운 소형종이 약 2,000여년전 고구려 시대부터 한반도에 유래정착된 것임

○ 구한말까지 고유의 재래돼지 형태를 유지하면서 사육지역의 명칭에 따라 지례돈, 사천돈, 제주돈 등으로 불러짐

○ 1908년을 전후하여 버크셔종과 요크셔종의 국내 도입되어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버크셔종과의 누진교배를 실시

○ 순수한 재래돼지의 혈통은 거의 소멸위기였으나 1986년 제주도 축산진흥원에서 제주도내 산간벽지에 재래돼지의 형태를 갖춘 돼지 5두를 구입하여 재래돼지 혈통을 유지·보존 함

○ 1988년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재래돼지 복원을 위해 제주도 축산진흥원, 충북도종축장에서 9두의 재래돼지를 구입·증식하면서 복원연구 실시

○ 2008년 재래종으로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품종 등록 실시하여 2014.10월 현재 81두 축산진흥원 재래종으로 품종등록 완료

○ 1987년부터 2014년 6월 현재 제주흑돼지(재래돼지) 6,236두를 제주도내 농가에 분양

▢ 제주흑돼지의 유전적 특성

○ MS 유전자형 분석에 기초한 재래돼지 집단 구조분석결과 재래돼지 모든 집단에서 90%이상의 균일도를 보였고, 제주집단은 클러스트 3에 단독으로 존재하여 타 집단과의 유전적 특이성 존재(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시험장, 2013년)

○ 제주흑돼지 특이적 유전자 36개 발굴(제주대학교,2013)

○ 제주흑돼지를 이용한 연구 논문 및 보고서 10편

○ **제주 흑돼지는 내륙의 재래돼지와의 유전적 특이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연구되어 짐**

▢ 제주흑돼지의 외형 특성

○ 재래돼지 특징이나 특성에 관한 문헌은 조선농업편람(1920), 권업모범장 성적요람(1927), 국립농사시험장 보고서(1946)에 기술

- 조선농업편람에서는 피모가 흑색으로 체격은 외소하고 체중은 22.5~32.5kg이며, 머리는 길고 뽀족하며, 배는 심히 하수되어 있고, 만숙에다 비만성이 없으나 체질은 강건하고, 번식력도 양호하며, 특히 육미는 조선사람의 입맛에 적합한 것 같다고 기술

○ 체형특성

- 몸전체의 모색은 흑색이며, 모발은 굵고 길다
- 몸통은 팽대하고 배가 처지며 옆구리에 주름이 있음

- 이마에 산모양 안면주름, 코 주위에 세로주름과 코끝이 흑색
- 엉덩이가 협소하고 빈약
- 코길이는 길고 곧으며, 귀는 하수되지 않고 직립

○ 제주흑돼지는 개량돼지에 비해 생산성(산자수 및 도달일령 등)이 낮아 상업적으로 가치가 없음(제주재래가축 편람, 1998)
- 산자수 : (제주흑돼지) 7.3 (개량종) 9~13두
- 100kg 도달일령 : (제주흑돼지) 360일 (개량종) 140일~150일

○ 1986년 상기 문헌상에 있는 재래돼지의 특징이 있는 **제주 산간 벽지의 돼지를 수집하여 지속적으로 보존·유지한 결과** 위와 같은 **특징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제주 흑돼지는 생산성이 낮아 **제주 고유의 품종으로 보존 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사료 됨

▢ 제주흑돼지 등록 및 관리체계

○ 2008년부터 한국종축개량협회에 재래종으로 품종등록 실시
- 지속적 혈통관리 및 재래종 특징에 맞는 돼지 선발·도태 실시

○ 2012년 제주흑돼지 FAO(국제식량기구)에 “제주 재래돼지” 단일품종으로 등재

○ 제주흑돼지의 성장속도 및 특징에 맞는 사양단계별 사양관리 실시

○ 악성가축전염병(구제역 및 돼지열병 등) 사전 차단을 위한 백신접종 프로그램 및 차단방역체계를 구축

○ 제주흑돼지를 사육돈사 2동(632㎡)으로 구성되어 사양단계별 돈방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가 사육

▢ 제주흑돼지 이용 실태

○ 제주 흑돼지 이용 전통문화
- 제주의 흑돼지 생활공간인 돗통은 인분과 음식물쓰레기의 처리 및 퇴비의 생산 등 생태순환의 장치역할을 함
- 돼지고기는 제주의 혼례, 상례, 포제(무속신앙) 등 빠질수 없는 음식재료이며, 추렴을 통해 공동체를 강화

○ 제주흑돼지로 만든 토속음식
- 제주흑돼지로 만든 음식 : 돗수애, 돔베고기, 고기 국수, 몸국, 돗새끼회 등
- 제주 전통음식 선호도 1위는 흑돼지고기(‘11.11.3, 제주일보)

○ 제주 성읍 민속마을, 휴애리 등에서 흑돼지를 관광자원으로 활용

○ **제주 흑돼지는 제주도의 생활, 민속, 의식주, 신앙 등 문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

▢ 종합의견

○ 제주 흑돼지는 축산진흥원에서 1986년 제주도 산간벽지에서 재래돼지 특징이 있는 돼지를 수집하여 현재까지 보존, 재래종으로 선발하여 지속적으로 재래종 품종등록을 실시하고 있다.

○ 특히 내륙과 격리된 제주도만의 토착화된 돼지에 대하여 제주도의 생활, 민속, 의식주, 신앙 등 문화와 밀접한 관련 있음

○ 내륙의 재래돼지와의 차이를 보면 유전특성분석에서 내륙의 돼지와 유전적 특이성이 보임

○ 1986년 이후 원 종돈 5두로 계속 번식을 지속하고 외부로부터 유전자가 도입되지 않고 제주도 축산진흥원만의 재래돼지를 생산, 사육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점이 인정됨

○ 따라서 문화재법 시행령 별표1의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제11조1항 관련)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됨

다만,

○ 제주 흑돼지의 재래종 품종 등록을 위해 몸전체의 흑색이 아닌 이모색이 있는 경우는 즉시 도태하고 재래종의 등록요건에 맞는 돼지를 선발하는 등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 함

○ 제주 흑돼지에 대한 내륙의 재래돼지와의 차별성에 대한 유전적연구와 제주축산진흥원 내의 흑돼지에 대한 지속적인 체형 및 생산성에 관한 조사 등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함

○ 제주 흑돼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되기 위한 전문가 등 자문단 구성과 연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등이 요구 됨

○ 제주 흑돼지는 현재 제주도에서 교잡되어 이용되어, 제주 흑돼지에 대한 이름에 혼선이 예상되는바, 제주재래돼지로 지정받는 것이 좋을 듯함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시험장 *>**

○ 육지지역의 경우 개량종이 1900년초에 도입되어 재래종과 교잡이 많이 이루어 졌으나, 제주도는 섬으로 고립되어 있어 이동수단이 없어 문헌상으로 1970년초에 이시돌목장에서 처음으로 외국산 흑돼지 버크셔 몇 마리가 도입되어 제주지역에 보급된 것으로 알려져 있음. 제주도 축산진흥원에서 1986년도에 우도 등 도서 벽지에서 형태학적으로 재래돼지에 가까운 개체를 선발하여 오늘날 재래돼지 집단을 형성하고 있음. 시기적으로 제주도에 개량종이 도입된 시점부터 수집까지 약 15년 정도 소요되었으나 그나마 육지지역에 비해 교잡정도가 약하고 보존 가치가 높은 것으로 사료됨.

○ 재래돼지 품종 형성에 대한 유전학적 증거와 현재 집단의 구성을 살펴보면 제주재래돼지 일부 집단의 경우 선조는 중국 산야에 서식하고 있는 야생멧돼지가 집돼지로 가축화 된 이후 한반도를 경유하여 제주도에 넘어온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 현재 모계유전 특성 분석을 위해 제주재래돼지 집단과 수입종과 육지지역에서 사육하고 있는 재래돼지를 계통유전학적 유연관계를 분석한 결과에서 제주재래돼지만 별도의 cluster로 구분됨에 따라 mtDNA(미토콘드리아 DNA)상에서 육지지역 재래돼지와 차별화 된다고 볼수 있음.

○ 그러나 제주도축산진흥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일부 개체는 mtDNA(미토콘드리아 DNA)를 분석해 보면 아시아형과 유럽형이 함께 확인됨에 따라 유럽형으로 보이는 개체들은 도태 처리할 필요성이 있으며, 다만 빈도면에서 제주도축산진흥원 돼지의 경우 아시아형이 70%이상 확인되는 반면, 육지지역 재래돼지들 경우에는 70%이상이 유럽형으로 관찰됨. 이점만 보더라도 재래돼지 보존가치는 높다고 할수 있고, mtDNA(미토콘드리아 DNA)상에서 아시아형으로 고정할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어 있으므로 쉽게 고정이 가능함.

○ 재래돼지의 경우 종축등록규정에 얼굴형태가 긴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실제로 재래돼지를 살펴보면 긴형태와 짧은형태가 동시에 확인되고, 최초 재래돼지의 선조는 중국에서 넘어 왔기 때문에 중국재래돼지의 경우 얼굴이 짧은 품종들이 다수 있어 얼굴형태를 명시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임

○ 재래돼지에서 부유두 발생은 일반돼지에서 대부분에서 확인되는 점으로 그 이유는 돼지가 산자수(한배 새끼수)가 많아 보다 많은 자손을 양육해야 하므로 산자수가 많은 개체에서 발생하는 원인으로 부유두가 도태 또는 선발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음. 그 이유는 유두수가 좌우 6쌍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그들 개체간 교배를 할 경우 자손의 유두가 모두 6쌍만 나오는 경우는 드묾. 다만, 종축등록 규정상에서 6쌍 또는 7쌍 등 좌우 대칭이 된 유두를 가진 개체를 선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 종합의견

제주도 축산진흥원에서 보유한 재래돼지는 1986년도에 수집되어 약 28년간 외부에서 재래돼지를 도입하지 않고 순계번식을 통해 유지해 왔다는 점에서 순수성이 아주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품종으로서 보존 가치가 아주 높다고 볼 수 있음. 일부 개체에서 발생한 새치는 육성기 또는 비육기에는 거의 발생이 하지 않고 2년 이상된 성체에서 일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런 노화현상이라 설명할 수 있고, 다만 표면에 흰털이 1cm이상 많이 확인되는 개체들은 도태가 필요함.

사. 의결사항 : 보류

천기 2014-11-13

13.「과천 관악산 연주대」 명승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과천 관악산 연주대」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과천 관악산 연주대」를 국가지정문화재(명승)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추진경과

- 2012. 2월~9월 고서화·고문헌에 나타난 명승자원조사(서울·인천·경기·강원)
- 2014. 3.17 국가지정문화재(명승)지정 신청서 제출 요청(문화재청→ 지자체)
- 2014. 7.24 국가지정문화재(명승)지정 신청서 제출 (경기도→ 문화재청)
- 2014. 10.17 지정조사 실시(***, ***, *** 문화재위원)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과천시장

(2) 신청내용

○ 문화재명 : 과천 관악산 연주대(果川 冠岳山 戀主臺)

○ 소 재 지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 등 5필지

○ 문화재종별 : 명승

○ 면 적 : 121,393㎡

○ 문화재 가치

- 연주대(戀主臺)는 관악산 정상에서 남동쪽으로 약 40m, 해발 629m에 위치해 있으며 , 3면이 50m 이상의 기암석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경치가 매우 아름다워 관악산 최고의 경승으로 꼽힘
- 연주대에서 북쪽으로 한강과 서울이, 남쪽으로 안양과 수원 일대가, 동쪽으로 과천을 사이에 두고 청계산이 마주 보이고, 동북쪽으로 멀리 양주와 광주의 중첩된 산들이 그림처럼 펼쳐져 보이며, 서쪽으로는 해가 질 무렵 서해의 낙조도 조망할 수 있음

라. 의결사항 : 보류

천기 2014-11-14

14.「치악산 구룡계곡」명승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치악산 구룡계곡」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치악산 구룡계곡」를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추진경과

- 2012. 2월~9월 고서화·고문헌에 나타난 명승자원조사(서울·인천·경기·강원)
- 2014. 3.17 국가지정문화재(명승)지정 신청서 제출 요청(문화재청→ 지자체)
- 2014. 9.25 국가지정문화재(명승)지정 신청서 제출 (원주시→ 문화재청)
- 2014. 10.15 지정조사 실시(***, ***, ***문화재위원)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원주시장

(2) 신청내용

○ 문화재명 : 치악산 구룡계곡(雉岳山 九龍溪谷)

○ 소 재 지 :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 산** 임 외 135필지

○ 문화재종별 : 명승

○ 면 적 : 1,650,102.79㎡

○ 문화재 가치

- 치악산의 북쪽에 위치한 구룡계곡은 최고봉인 비로봉까지 이르는 최단 거리 코스를 제공하며, 울창한 소나무 숲과 깨끗한 계곡물, 그리고 계절에 따라 변화무쌍한 자연 경관이 장관을 이루는 계곡으로 유명함
- 구룡계곡에는 신라시대 668년(문무왕 8년)에 의상대사가 창건한 것으로 전하는 구룡사가 있는데, 9마리 용의 전설이 전해 창건 당시 구룡사(九龍寺)에서 조선중기 이후 절 입구에 있는 거북모양 바위 때문에 절 이름을 '거북구(龜)'자로 고쳐 쓰게 되었다고 전함
- 구룡사를 비롯해 구룡소, 세렴폭포, 거북바위 등의 명소 및 조선시대에 이곳의 소나무를 황장목이라 하여 함부로 베는 것을 금했음을 표하는 '황장금표(黃腸禁標)'라는 석각과 수백미터에 이르는 노송 군락 등 명승으로서의 주요 요소들을 골고루 지니고 있음

라. 의결사항 : 보류

천기 2014-11-15

15.「마라도 천연보호구역」내 살레덕항 개발계획에 대한 검토

가. 제안사항

「마라도 천연보호구역」내 어선 계류시설 조성을 위한 살레덕항 개발계획(안)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423호 마라도 천연보호구역

○ 소 재 지 :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580 등

○ 지 정 일 : 2000.7.18.

(3) 사업개요

○ 사 업 명 : 마라도 살레덕항 개발사업

○ 사업위치 :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번지선 공유수면(살레덕항 일원)

○ 사업내용 : 살레덕항 개발계획(안)

- (1안) 살레덕항 북측 어선계류 안
  * (살레덕항 북측 준설) 8,500㎥, (접안시설) 5t급 소형선박 65m, (북방파제) 65m, (남방파제) 20m, (선회장) 30m / 84.7억원
- (2안) 살레덕항 북측 여객선 + 어선계류 안
  * (살레덕항 북측 준설) 15,800㎥, (접안시설) 5t급 소형선박 65m, 200t급 여객선 50m, (북방파제) 50m, (남방파제) 125m, (선회장) 80m / 388.1억원
- (3안) 살레덕항 남측 여객선 계류 안
  * (살레덕항 남측 준설) 5,900㎥, (접안시설) 200t급 여객선 2선석 60m, 50m, (북방파제) 60m, (남방파제) 185m, (선회장) 80m / 428.4억원
- (4안) 남덕 여객선 계류 안
  * (남덕 준설) 4,100㎥, (접안시설) 200t급 여객선 2선석 120m, (북방파제) 150m, (남방파제) 105m, (선회장) 80m / 542.5억원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

다. 의결사항 : 보류

【보고사항】

천기 2014-11-16

16.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

가. 보고사항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신청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조치한 사항임.(26건)

구분	대상문화재	주 요 내 용	비 고
현상변경허가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 신청인 :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 ○ 허가사항 : 물새류 대체서식지 입간판 및 홍보·알림판 설치 - 목적 : 문화재보수정비사업으로 완료한 물새류대체서식지의 천연기념물(큰고니 등) 보호 관련 대국민 홍보를 위한 입간판 및 홍보알림판 설치 - 사업내용 - 물새류 대체서식지 대국민 홍보 입간판 및 홍보·알림판 설치 · 입간판(1개) : 1,800㎝ × 700㎝ · 홍보·알림판(각 1개) : 1,500㎝ × 700㎝ - 사업위치 : 을숙도 대체서식지 입구 ○ 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2014.11.30	<허가>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 신청인 :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장 ○ 허가사항 :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주변 '송수관로 매설' 현상변경 허가 - 사업내용 ·구역 : 부산광역시 강서구 덕산정수장 및 인근 ·규모 : 송수관로 D 1,500, L=3,757.9m - 사업위치 : 부산 강서구 대저2동 2881번지 일대 ○ 허가기간 : 2015.1.1.~2016.12.31. ○ 조건부허가 : 겨울철새 도래시기인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공사 중지	<조건부 허가>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 신청인 :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 ○ 허가사항 :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의 가시연꽃 채종 및 이식 현상변경 허가 - 사업내용 ·가시연꽃 채종 : A=6,000㎡(대저, 맥도, 을숙도 생태공원) ·가시연꽃 식재 : A=3,000㎡(을숙도 내)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1207-2 ○ 허가기간 : 2014.11.3.~2015.12.31.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 요 내 용	비 고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 신청인 : *** ○ 허가사항 :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의 대선 및 도교 설치 현상변경 허가 - 대 선(선박계류장) · 용 도 : 레저 선박 및 어선 접안 시설로 인근주민의 어업활동의 편리 제공 및 레저 활동 지원 · 재질 : 나무 · 규모 : 20m×10m(보트4~5대 정박, 보트길이 8m) - 도 교 · 용 도 : 육지부와 대선연결 · 규 모 : 9.5m×0.9m - 사업위치 : 부산 강서구 녹산동 **, **번지 ○ 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2017.12.31. ○ 조건부허가 : 철새의 월동기인 11월~3월을 피하여 공사를 실시할 것	<조건부 허가>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 신청인 : *** ○ 허가사항 :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의 건축물 신축 현상변경 허가 - 사업내용 · 대지현황 : 지목(대지), 면적 76.00㎡ · 건축규모 : 연면적 42.60㎡, 건축면적 42.60㎡, 최고 높이 6.0m(1층), 건폐율 58.36%(법정 60%), 용적률 58.36%(법정 300%), 일반 철골 구조, 기타 정화조 설치, 주차장 1대 ○ 사업위치 : 부산 강서구 대저2동 ****번지 ○ 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2015.3.31. ○ 조건부허가 : 철새의 월동기인 11월~3월을 피하여 공사를 실시할 것	<조건부 허가>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 신청인 : *** ○ 허가사항 :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의 어선접안용 계류시설 설치 현상변경 허가 - 사업목적 : 어업기반시설 확충 및 어업인 안전 확보를 위해 국비보조사업으로 어선 접안용 계류시설 설치 - 사업내용 · 부잔교 : 45m ×18m, 재질 PE ○ 사업위치 : 부산 강서구 둔치강변길 ***(봉림동) ○ 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2014.12.31. ○ 조건부허가 : 철새의 월동기인 11월~3월을 피하여 공사를 실시할 것	<조건부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 요 내 용	비 고
	천연기념물 제322호 무주일원의반딧불이와 그 먹이서식지	○ 신청인 : *** ○ 하가사항 : 무주일원의반딧불이와 그 먹이서식지 주변 임목벌채 및 수종갱신 현상변경 허가 - 임목벌채 : 낙엽송, 참나무류 4,858 주 - 수종갱신 : 백합나무 6,400주, 3.2ha - 사업위치 : 전북 무주군 무주읍 가옥리 산**** ○ 허가기간 : 2014.11.03.~2015.12.31.	<허가>
	천연기념물 제60호 고양 송포 백송	○ 신 청 인 : ***, *** ○ 허가사항 - 사 업 명 : 다세대주택 신축(6동) - 사업위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 - 사업내용 : 다세대주택 신축(6동) ・지상4층, 높이 14.4m, 건축면적 982.36㎡, 연면적 2,335.34㎡, 철근콘크리트조, 주차 42대, 오수처리시설 8㎥/일 ○ 허가기간 : 2014.10.27. ~ 2015.5.31.	<허가>
	천연기념물 제374호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	○ 신 청 인 : 국립수목원 ○ 허가사항 - 사 업 명 : 나도풍란 복원 - 사업위치 : 제주도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산** - 사업내용 : 나도풍란 복원 시범사업 실시 및 모니터링 ・이식시기 : 2014년 10월, 2015년 3・6・8월 ・이식수량 : 시기별 50개체 이식 * 나무 1그루 당 2~3개체 이내 이식 ○ 허가조건 - 추가적인 나도풍란 복원사업은 시범사업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추후 검토 - 나도풍란 복원 시범사업은 일정구간을 정하여 실시하되, 이식작업 시 비자나무 생육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의 ○ 허가기간 : 2014.10.27. ~ 2015.9.30.	<조건부 허가>
	천연기념물 제112호 영광 불갑사 참식나무 자생지	○ 신 청 인 : 불갑사 ○ 허가사항 - 사 업 명 : 안전난간 설치 - 사업위치 : 전라남도 영광군 불갑면 모악리 산*** - 사업내용 : 산책로 안전난간 설치(127.04m, 105경간) ○ 허가기간 : 2014.10.27. ~ 2015.3.31.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 요 내 용	비 고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천연보호구역	○ 신 청 인 : 해양경찰청 ○ 허가사항 - 사 업 명 : 수신기 설치 - 사업위치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 - 사업내용 : 항공기 영상전송장치 수신기 설치 ・길이 3m, 철탑 내 ○ 허가기간 : 2014.10.30. ~ 2015.4.30.	<허가>
	천연기념물 제420호 성산 일출봉 천연보호구역	○ 신 청 인 : *** ○ 허가사항 - 사 업 명 : 건물 증축 - 사업위치 :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 - 사업내용 : 건물 증축(1층 건물) ・건축면적 32.31㎡ 증축(52.89㎡ → 85.2㎡) ○ 허가조건 : 기 제출된 설계서대로 시행 * 다만, 증축물도 기존 건물과 같이 가운데 마루를 만들어서 별개의 건물처럼 보이도록 만드는 것을 권고 (전통적인 제주도 주거건물(안거리, 밖거리, 목거리)의 모습 연출 기대) ○ 허가기간 : 2014.11.3. ~ 2014.12.31.	<허가>
	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 신 청 인 :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장 ○ 허가사항 - 사 업 명 : 1131호선 가드레일 설치 - 사업위치 : 제주도 제주시 용강동 산**** 등 - 사업내용 : 지방도 1131호선(5.16도로) 가드레일 설치(1,284m) ○ 허가기간 : 2014.11.4. ~ 2015.1.31.	<허가>
	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 신 청 인 :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장 ○ 허가사항 - 사 업 명 : 지방도 배수로 정비 - 사업위치 :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산*** 등 - 사업내용 · 지방도 1131호선(5.16도로) 배수로 정비 : 93m * (1구간) U형측구 설치(0.7×0.7m, 8m), 집수정 설치(1개소, 0.9×0.9×1.5m), 면벽설치(높이 2m, 길이 60m), 가드레일 설치(4×0.7m, 14경간) * (2구간) 가드레일 설치(4×0.7m, 19경간), 사각수로관 설치(D 500, 25m), 아스콘포장(32㎡) · 지방도 1139호선(1100도로) 배수로 정비 : 184m * 면벽설치(높이 1m : 65m, 높이 0.7m : 119m) ○ 허가기간 : 2014.11.4. ~ 2015.1.31.	<허가>
	명승 제27호 양양낙산사의상대와홍련암	○ 신청인 : 낙산사 주지 *** ○ 변경허가사항 : 동절기 공사 불가능으로 허가기간 변경 - (당초) 2014.04.02 ~2014.12.31→ 2014.04.02~2015.6.30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 요 내 용	비 고
	명승 제43호 제주도서귀포정방폭포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제주 서귀포정방폭포 주변 관광숙박시설 신축 -1동,7층,철근콘크리트구조(L=14.2m,W=16.3m, H=21.8m) -대지면적 651㎡, 바닥면적 551.04㎡, 건축면적 232.85㎡, 연면적 1,565.76㎡ ○ 허가기간 : 2014.11.14~ 2015.11.30. ○ 문화재와 이격거리 : 250m(2구역)	<허가>
	명승 제57호 담양식영정일원	○ 신청인 : 한국농어촌공사 ○ 허가사항 : 광주호 둑 높이기 시업관련 배롱나무 군락지 조성 - 배롱나무 170주 식재 ○ 허가기간 : 2012.04.13~ 2015.06.30. ○ 문화재와 이격거리 : 90m	<허가>
	명승 제62호 가야산해인사일원	○ 신청인 :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 허가사항 : 가야산 해인사지족암 화장실 및 창고신축 1) 화장실 및 창고 신축 : 지상 1층, 건축면적 45.36㎡ (W4.2*L10.8*H5.51) - 한식목구조, 정면4칸, 측면1칸, 민도리, 5량가, 홑처마, 맞배지붕 2) 석축정비 : 기존 자연석 축대 해체 및 설치 (H=3~5.3m, L=17m) 3) 배수로 정비 : 자연석 배수로 설치 (H=0.3 W=0.3 L=27.5m) 4) 기존 창고 철거 : 건축면적 75.64㎡, 목구조, 골함석 지붕 ○ 허가기간 : 2014.11.05 ~ 2015.10.31. ○ 문화재와 이격거리 : 0m	<허가>
	명승 제67호 서울 백악산일원	○ 신청인 : ** 제****부대장 ○ 허가사항 : 백악산 내 * ***** 설치 - 북악 2.3초소 : 길이 20m, 높이 2m - 삼청 3.5초소 : 길이 20m, 높이 2m ○ 허가기간 : 2014.11.12 ~ 2015.11.30. ○ 문화재와 이격거리 : 지정구역 내	<조건부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 요 내 용	비 고
	천연기념물 제466호 제주용천동굴	○ 신 청 인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계자연유산.한라산연구원) ○ 허가사항 - 사 업 명 : 거문오름용암동굴계 동굴지표 사구층 형성을 위한 주변 모래 채취 - 사업위치 :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월정리****** - 사업내용 · 월정리 ****번지 : 모래채취 물량 2,350㎥ · 월정리 *****번지 : 모래채취 물량 4,082㎥ ○ 허가기간 : 2014.11.10 ~ 2015.02.28. ○ 허가조건 - 반드시 과거 사구가 발달해 있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여 모래를 쌓아야 함. - 모래를 채취할 대상이 되는 사구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하다면 사구에 대한 연구·기재가 수행되어야 함(단, 2007.09.에 연구·보고된 지역과 같은 지역일 경우에는 필요 없음). - 쌓은 모래를 보호하기 위하여 잔디를 심을 때에도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외래종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농약, 비료 등의 사용은 최대한 억제되어야 함.	<조건부 허가>
허가사항 변경 허가	천연기념물 제229호 양양 포매리 백로 및 왜가리 번식지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양양 포매리 백로 및 번식지’ 주변 ‘버섯재배사 신축’ 현상변경 허가사항 사업기간 변경허가 - 사업내용 : 버섯재배사 2동, 면적 330㎡ (1개동 당 165㎡) - 사업위치 : 양양군 현남면 남애리 ***번지 ○ 허가기간 : 2014.5.26~2014.9.30 ○ 허가기간 변경허가 : 2014.5.26~2015.9.30 ○ 변경사유 : 공기부족으로 인한 기간 연장	<허가사항 변경허가>
	천연기념물 제322호 무주일원의 반딧불이와 그 먹이서식지	○ 신청인 : *** ○ 허가사항 : 경주이씨 문중제실 신축 현상변경 허가사항 사업기간 변경허가 - 건축면적 54.45㎡(한식목구조) ○ 허가기간 : 2014.03.26.~2014.11.30. ○ 허가기간 변경허가 : 2014.03.26.~2015.11.30. ○ 변경사유 : 공기부족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 허가조건 : 천연기념물 대상종인 늦반딧불이는 성충이 8월 말에서 9월 중순경에 출현하므로 이 시기에 외부로 과다한 전기 불빛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사항 변경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 요 내 용	비 고
	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 신 청 인 : *** ○ 허가사항 - 사 업 명 : 단독주택 신축 - 사업위치 :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 - 사업내용 : 단독주택 신축(1동) ・높이 4.15m, 건축면적 119.13㎡, 연면적 102.72㎡ <변경 허가사항> 허가기간 연장 ○ (당초) 2014.7.21.~2014.12.31. → (변경) 2014.7.21.→2015.6.30.	<허가사항 변경허가>
	천연기념물 제30호 양평 용문사 은행나무	○ 신 청 인 : 용문사 주지 *** ○ 허가사항 - 사 업 명 : 해우소 증개축 - 사업위치 :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신점리 *** - 사업내용 : 해우소 증개축 ・기존 해우소 해체(10.73㎡) 후 증개축(40.5㎡, 높이 5.2m) <변경 허가사항> 허가기간 연장 ○ (당초) 2014.4.30.~2014.10.31. → (변경) 2014.4.30.→2015.5.31.	<허가사항 변경허가>
	천연기념물 제146호 칠곡 금무봉 나무고사리 화석산지	○ 신 청 인 : 칠곡군수 ○ 허가사항 - 사 업 명 : 칠곡 왜관3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 사업위치 : 왜관읍 낙산리 ~ 지천면 금호리 - 사업내용 ・사업연장 : 전체 3.54km(1진입도로 L=0.74km, 2진입도로 L=2.80km) ・폭 원 : B=20.0m (4차로) ・구 조 물 : 터널 1개소(705m) , 교량 1개소(38m/심의제외지역), ○ 허가조건 - 진입도로공사 착공 전 도로개설 예정지역 전체에 대한 화석산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사과정에서 암반이 새로이 노출되는 절토부와 굴착부, 산출암석 등을 대상으로 화석산출 입회조사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할 것 <변경 허가사항> ○ 사업내용 - 사업연장, 폭원 : 변경없음 - 구조물 ・ 터널 축소 :(기존) 705m → (변경)695m ・ 교량 추가 : 금호천교(연장 11m , 폭원 33.4m) ○ 허가기간 : 2014.3.31. ~ 2018.05.31. ○ 허가조건 : 기허가 조건 준수	<허가사항 변경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 요 내 용	비 고
	천연기념물 제236호 제주한림 용암동굴지대 (소천굴)	○ 신 청 인 : *** ○ 허가사항 - 사 업 명 : 축사증축 및 액비저장조 신축 - 사업위치 :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번지 - 사업내용 ・축사증축 : 3,709.43㎡(기존 1,904.42㎡, 철거 1160.99㎡, 증축 2,966㎡) ・액비 저장조(가축분뇨 처리)신축 : 1,446톤 ○ 허가조건 - 액비저장조 신축시 가축분뇨 저장・ 처리시설의 누수 등으로 지하수의 오염을 확실하게 방지할 수 있는 공법으로 시공할 것 . - 터파기 등으로 동굴이 발견될 시에는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매장문화재 발견신고를 할 것 <변경허가사항> ○ 사업내용 - 축사증축 : 변경없음 - 액비 저장조(가축분뇨처리시설)추가 신축 : 2,406톤 ○ 허가기간 : 2014.9.22. ~ 2015.02.28. ○ 허가조건 : 기 허가조건 준수	<허가사항 변경허가>

나. 의결사항 : 접수